



# 개정 정부 계약제도 해설

양해진/재무부회계제도와 사무관

---

**최근** 정부에서는 UR협상에 따른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향상을 통한 경쟁력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정부 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건설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관련회계예규를 개정·공포한 바 있다.

---

정부계약관련법령은 국가기관에 적용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이를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이와 관련된 업계의 종사자들이 이번 개정 내용에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관계실무자 및 업계관계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여 개정 규정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공사 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를 총액단가 입찰대  
상에 포함, 계약금액 조정시의 분쟁 소지를 없애고 충실한 건  
적으로 기술개발 노력 유도를 위해 견적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상으로 확대**

**1. 총액단가(내역)입찰 대상확대 및 개선**

(예산회계법시행령 §86, 공사입찰유의서 §6, 7)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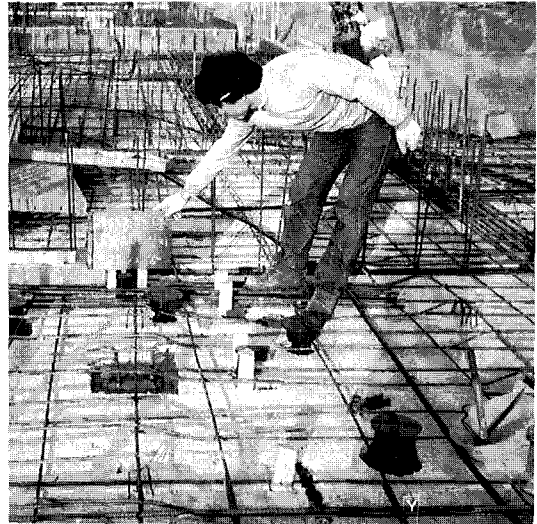
입찰시 입찰금액과 동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단가 입찰대상이 종전에는 1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에서 예정금액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를 총액단가 입찰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맞춰 공사에예정금액 30억원이상인 경우는 견적기간을 현행 2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연장하였다.

〈해설〉

종전에는 건축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입찰후 (착공계 제출시)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입찰금액을 정확한 견적에 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견적능력 향상을 통한 기술개발노력이 미흡하였고, 입찰금액결정이 입찰현장의 분위기에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단가가 불명확하여 물가변동·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는 산출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체결후 계약금액 조정시 분쟁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축공사를 토목공사와 같이 총액단가 입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건축공사의 경우는 토목공사와 달리 내역(품종)이 다종다양하여 발주관서에서 제시하여야 할 물량과 동 물량에 대한 단가설명 기준설정이 방대하고, 입찰자의 입장에서도 동 물량에 대한 단가산정을 위해서는 전산화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체에의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우선 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건축공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와같이 내역입찰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충분한 견적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견적



기간을 공사에예정금액 30억원이상인 경우 현행 20일 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입찰처리금액과 내역서금액의 불일치시 무효처리**

(계약사무처리규칙 §25, 공사입찰유의서 §10 입찰서 무효처리와 관련한 회계통칙)

〈개정내용〉

총액단가입찰로 실시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종전에는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여 입찰서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와같은 입찰을 무효처리토록 하였다.

〈해설〉

총액단가입찰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관서에서 현장설명시 품명 및 수량을 명시하여 제시한 공종별목절물 물량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고 이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

**충실한 견적 유도 및 건설업체의 부담과 불편, 현장설명장소에서  
의 답합, 건설기술자의 자격증 거래 등 부작용을 극소화  
하기 위해 예정금액 3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여 발주관서에서 현장설명시 물량의 단가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단가설명서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찰참가자 가운데는 정확한 견적을 통하여 단가를 산출함이 없이 부실한 견적으로 입찰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부실한 견적에 의한 입찰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입찰서상의 금액과 내역서상의 금액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유효한 입찰로 보아 입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견적능력 향상이라는 총액 단가입찰제도의 시행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었기에 이번 개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역서 작성시 단순오기 등 무수히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를 무효처리토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물론 충실한 견적을 통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유도 및 건전한 입찰질서 확립이라는 개정취지에 따르면 단순한 착오에 의한 오기의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갑작스런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 지금까지의 입찰관행 및 발주관서 계약 담당공무원의 입찰업무 수행능력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방법을 강화·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찰무효처리토록 통첩(회제2210-243, '92.4.27)을 시달하였다.

첫째, 입찰서금액과 내역서상의 총계 표기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둘째, 내역서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목별로 작성한 때에는 동 비목의 합계금액과 총계표기비목이 불일치할 경우(다만 내역서를 공종별로 작성한 때에는 공종별 합계금액과 총계표기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셋째,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목적 물 물량 중 주요부분을 누락 또는 변경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압찰인 경우

넷째, 기타 발주관서의장이 공사의 내용·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 차순위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을 고려할 때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고로, 이중 넷째의 경우는 기타 세가지 경우외에 발주관서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무효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주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이를 확대해석·적용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30억원이상 공사의현장설명참가의무화**

(계약사무처리규칙 §25, 공사입찰유의서 §10)

**<개정내용>**

종전에는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의 입찰도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의 입찰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예정금액 3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의 입찰을 입찰무효사유에 신설·추가하여 현장설명참가를 의무화 하였다.

**<해설>**

현장설명참가제도는 공사의 특성이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실한 견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예전에는 모든 공사에 현장설명참가를 의무화해 오다가 현장설명이 입찰참가자들의 담합기회로 이용되고 경쟁업체의 현장설명참가를 방해하는가 하면 건설업체들의 기술자보유 부담도 적지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지난 '87.8월 현장설명 참가여부를 입찰참가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임의화 하였으나, 이에 따라 공사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충실한 견적없이 입찰에 참가하는 등 문제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 기본설계입찰에서 선정된 실시설계 적격자 1인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해 입찰절차의 간소화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활성화 유도**

됨이 있었고, 이 경우 부실시공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현장설명참가를 의무화 하되 그 대상을 예정금액 30억원이상 공사에 한정함으로써, 모든 공사의 현장설명참가를 의무화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과 불편, 현장 설명장소에서의 담합, 건설기술자의 자격증거래 등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30억원이상 공사에 있어서의 충실한 건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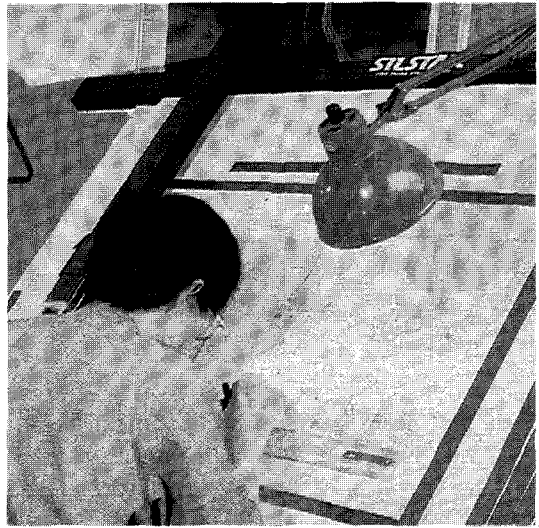
**4. 설계·시공일괄(턴키)입찰 절차 간소화**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7)  
(개정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 종전에는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입찰을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기본설계입찰만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1인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해설〉**

설계·시공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설계·기타시공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시하는 입찰방법으로서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절감을 유도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분리입찰토록 되어 있어 공사발주 소요기간의 장기화, 참여업체의 소요경비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기본설계입찰에서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1인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하여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업체의 설계비 부담경감 및 발주기간을 단축해 설계·시공일괄입찰이 활성화 되



도록 하였다.

**5. 턴키입찰 참가자격요건 개선**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6의 2)

**〈개정내용〉**

종전에는 턴키입찰 참가자격요건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어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왔으나 참가자격을 건설업면허와 기술용역업(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의 양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하고, 한가지 요건만 갖춘 업체는 타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설〉**

턴키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능력과 시공능력이 모두 요구되나 종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건설업체가 이를 수주하여 설계용역부분은 하도급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이는 기술용역육성법에 배치되고 국내엔지니어링 산업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는 대상 즉, 대형공사의 범위를 종전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 조정**

의 기술향상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시에는 턴키입찰 참가업체는 건설업면허와 기술용역업(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의 양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소수인 점을 고려하여 건설업체와 용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관련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를 정비하여 입찰 참여 업체의 폭을 확대하였다.

**6. 대형공사 범위조정**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2)

〈개정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는 대상 즉, 대형공사의 범위를 종전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하였다.

〈해설〉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건설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매년초 심의하여야 하는 바, 공사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심의 대상이 점차 증가되어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워지고 절차의 번잡과 공사발주 소요기간이 장기화 되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형공사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심의대상공사를 축소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7. 지역제한입찰금액을 20억원미만공사로 상향조정**

(계약사무처리규칙 §31)

〈개정내용〉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해당지역(특별시, 직할시, 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대상금액을 현행 15억원미만에서 2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해설〉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건설업체의 인위적인 축소로 인한 기술개발노력의 저하와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건설업체내에서도 경향간·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지역간 이해상충되는 면이 커서 그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그 적정한 기준설정에 대한 의견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나 앞으로 더 이상의 상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8. 분할발주대상공사 확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3)

〈개정내용〉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는 일괄발주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항만시설, 어항시설, 도로, 하천, 농지개량공사, 및 지하철공사에 대한 분할발주를 허용하여 왔던 바, 이번 개정에서 택지조성공사, 공업단지조성공사, 교통안전시설공사 등 3개를 분할발주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설〉

예산회계법령상 동일구조물공사(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와 단일공사(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설계서 등으로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일괄발주하여

**분할발주 대상 공사는 기존의 항만시설, 어항시설, 도로, 하천, 농지개량공사, 지하철공사에 이어 택지조성공사, 공업단지조성공사, 교통안전시설공사 추가로 중소기업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야 하며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기본 계획서나 설계서 등에 의하여 공구별로 분할계획된 공사로서 이행기간·목적·성질 등을 고려할 때 일괄발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시설, 어항시설, 도로, 하천, 농지개량공사 및 지하철공사에 대해 분할발주를 허용하여 왔는 바, 이번에 택지조성공사, 공업단지조성공사를 추가한 것은 이들이 농지개발공사의 경우와 같이 규모에 비해 기능의 상호 연결성이 적고 또한 구획설정이 용이한 특성이 있어 이의 분할발주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교통안전시설공사는 관련기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교통안전시설의 신속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교통사고 유발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9. 기술용역의 입찰방법 개선**

(예산회계법시행령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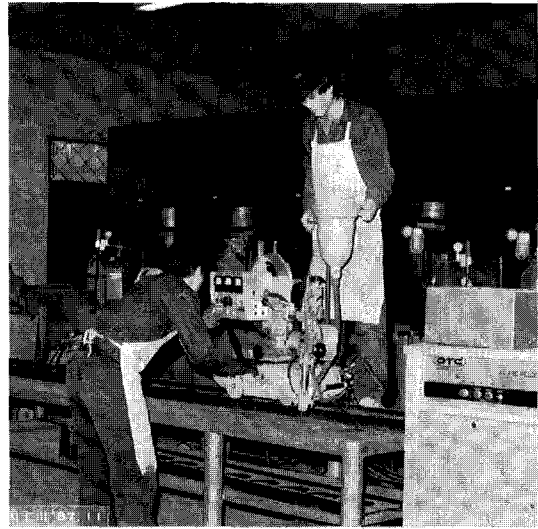
〈개정내용〉

기술용역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가격입찰만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기술입찰과 가격입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입찰의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설〉

현행 기술용역계약제도가 가격경쟁위주로 시행됨으로써 덤핑입찰에 의한 성과품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면이 있어 개방을 앞둔 국내기술용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되어 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에 제출케 해 기술입찰서를 먼저 개찰, 적격업체를 선정 한 뒤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선기술·후가격 입찰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Two En-



velope Bid System(기술입찰서를 먼저 개찰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뒤 우수기술업체로부터 차례로 가격협상을 하는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적용대상 사업범위, 기술평가모델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앞으로 회계예규로 규정할 예정이다.

**10.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정된 신기술 보호**

(예산회계법시행령 §104, 수의계약운용요령 §2)

〈개정내용〉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외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대상에 추가했다.

〈해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사를 수의계약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종전에는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면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총 공사 이행 보증을 명시, 혼란의 소지를 없애고 건설업체들이 매 차수별 공사계약시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번거로움 해소

서도 신기술 지정공사는 수의계약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이 없어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기술로 지정된 공사에는 녹색도공법공사와 교량이음쇄공법공사 등 2종이 있다.

### 11. 제한경쟁입찰시 제한금지완화

(계약사무처리규칙 § 32,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 3)

#### 〈개정내용〉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그 제한사항 및 기준을 선택적 또는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중복적 제한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선택적 제한은 허용했다.

#### 〈해설〉

예산회계법령상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제한사항을 보면 ①20억원이상 대규모공사는 도급한도액이나 실적 ②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기술보유상황 또는 실적 ③예정가격 20억원미만인 공사는 공사현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되어 있다.

종전에는 이와같은 제한사항 및 제한기준에 대하여 위의 ①, ②, ③의 경우간에는 물론 ①, ②, ③ 각각의 경우 내에서도 일체의 선택적 또는 중복적 제한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제한금지방법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 또한 쉽지 않아서 일선 발주관사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중복적 제한은 종전과 같이 금지하되 선택적 제한은 금지내용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소 완화하였다. 실례를 들어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 예 1) 10억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관할 시·도내에 그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면서 특수한 기술보유상황등으로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종전과 다름이 없다.

예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기술보유상황, 공사실적을 동시에 요구하여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종전과 동일하나 기술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중 어느 하나의 사항으로 선택적 제한하는 것은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12.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연대보증범위 명시

(계약사무처리규칙 § 70, 공사계약일반조건 § 5조의 2)

#### 〈개정내용〉

공사계약체결시에는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그 보증범위에 대하여 총공사 이행을 보증함을 명백히 하였다.

#### 〈해설〉

종전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그 보증범위가 차수별 계약부분인지 무기한 총공사금액인지 여부가 혼란의 소지가 있어 실제로 발주관사에 각차수별로 계약시마다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총공사 이행을 보증함을 명시함으로써 혼란의 소지를 없애고 건설업체들이 매 차수별 공사계약시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공사의 예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의 시공 기록 작성 제출 의무화로 시공자의 시행착오나 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타건설업체들이 활용토록 유도**

**1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계약사무처리규칙 §72)

〈개정내용〉

종전 일반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었던 바, 이에 포함되어 있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해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부 공동주택관리령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시공자의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여 민간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일치시켰다.

**14. 3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사 시공기록 작성 제출 의무화**

(계약사무처리규칙 §83, 공사계약일반조건 §32)

〈개정내용〉

종전에 계약금액 30억 원이상의 신규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도중에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기록한 공사관련 자료를 작성 비치하였다가 발주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계약조건에 정해져 있던 것을 예정가격이 3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총공사금액” 기준)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시공기록을 책자로 5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시공기록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정가격에 반영해 주도록 했다.

〈해설〉

이와같이 예정가격 3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의 시공기록 작성제출을 의무화 한 것은 시공자의 시행착오나 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다른 건설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18일 발표한 건설부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지난 '91년도 수돗물 사용량은 모두 47억6천5백만톤으로 하루평균 1천3백5만톤씩 생산능력(하루 1천6백87만톤)의 77% 수준이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국민의 하루 상수도 소비량은 8톤 트럭 1백63만2천여대분으로 한줄로 길게 늘어 세우면 서울~부산을 34차례 나 오기는 1만4천6백88km에 이르는 양이다.

국민 일인당 하루 소비량은 3백76ℓ로 대략 2드림분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돗물 하루 총소비량 8톤 트럭 163만 대분**

'91년말 현재 전국 상수도관은 모두 9만7천1백88km로 지구둘레의 2.4배에 이르고 있으며, 상수도 수원지는 하천이 67.5%·저수지 30.0%·지하수 1.1%·용천수 0.5% 등으로 수돗물 3분의 2 이상이 하천에서 취수되고 있어 깨끗한 상수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천오염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전국 평균수도요금이 톤당 2백11원으로 동경·워싱턴·파리 등 외국 주요 도시 수도 요금보다 2.8~10.9배가 낮다고 밝혔다.

